

의안번호	2217413
의 퇴 인	권향엽 의원
회 답 일	2026.4.15.
추계번호	26B002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u>자영업자</u>(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됨(제1항) <삭 제>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제3항) <삭 제>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제4항) <삭 제>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제5항)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u>자기의 과세소득총액</u>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함(제6항) <삭 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함(제10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9조의2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상세 사유

- 현행법상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당연적용),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가입제도를 병행하여 시행
-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자영업자는 본인이 고시된 보수액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¹⁾
- 즉, 현행법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당연적용이 아니라 임의가입 형태로 고시된 보수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혜택을 받게 됨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 ⑫ (생략)

[표 1] 자영업자 구직급여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수(명)	30,629	36,859	42,643	47,604	53,705
구직급여 수급 자영업자 수(명)」	1,495	2,056	2,575	3,248	3,490
구직급여 지급액	7,212	9,932	12,383	16,768	18,822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은 자영업자로 하여금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의 조문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도록” 변경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수입 및 지출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의 이유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
- 첫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추산해야 하나, 개정안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에 따른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1인당 보험료와 지원단가를 검토하여야 하나,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자기의 과세소득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현행법상 자영업자는 고시된 보수액 중 선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 금액만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현재 자영업자 구직급여의 1인당 보험료 및 구직급여 지급액에는 피보험자의 소득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자영업자의 과세 대상 소득총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하여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개정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